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
약관

◈ 목 차 ◈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 약관 **5**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5
제2조【할인보험료의 적용】 5
제3조【흡연상태 변동 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5
제4조【계약전 알릴의무】 6
제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의한 특약의 해지】 6
제6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6
제7조【특약의 감액】 6
제8조【해지환급금】 7
제9조【배당금】 7
제1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 규정의 준용】 7
흡 연 질 문 서 8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 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 가입적격자(加入適格者)로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흡연(吸煙)"이라 합니다)을 하지 않고 회사가 비흡연 피보험자로 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조【할인보험료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비흡연 할인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산출기준 및 방법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흡연상태 변동 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할인된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할인전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약은 해지 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할인된 보험료의 할인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적용대상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6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제3항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흡연질문서(<별지1> 참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비흡연 피보험자로 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흡연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의한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이 특약의 적용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이 특약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할인된 보험료의 할인 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적용대상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을 2인(3인, 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을 받고 회사가 승낙한 날로부터 책임을 집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을 받고 회사가 승낙하였을 경우에는 승낙한 날의 다음달 해당 보험료부터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특약의 감액】

①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부 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에 의한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② 감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이 특약의 최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 되며 감액일 이후 납입해당 분부터 할인전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8조【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9조【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는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지1>

흡 연 질 문 서

성 명 _____ 생년월일 년 월 일

1. 귀하는 최근 12개월 내에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2. 이전에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담배를 끊기 전에 1일 보통 몇 개비를 피웠습니까?

1일 평균 : 개

3. 귀하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담배를 사용하거나 또는 최근 12개월 내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예"이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4. 귀하는 의사로부터 담배를 끊으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예"이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본인은 위에서 알린 내용이 사실이고 빠짐없이 기재된 것이며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가입청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

피보험자의 흡연에 관하여 알린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진술인 경우에는 비흡연자할인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납입 보험료 및 정산차액을 납입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 약 자 인

피보험자 인

작성일자 년 월 일